

#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6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 11. 15.,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9. 11. 25.
- 다. 상정일자 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(2019. 12. 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위생과장 양승열

### 1) 제안이유

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2)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설치근거 :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- 위탁시설 : 마포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

- 위탁사무
  -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·영양관리 실태조사, 순회방문 지도
  -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
  -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유형, 급식 규모별 식단 및 프로그램 개발
  - 대상별(어린이, 학부모, 교사, 조리원 등) 위생·영양교육 실시 등
- 위탁기간 : 3년
- 위탁기관 선정방법 및 주체 : 공개모집 / 선정심사위원회(별도 구성)
- 관리대상 : 201개소(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)
- 소요예산 : 3억(국비9천만원, 시비1억5백만원, 구비1억5백만원)

#### 나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급식소 규모 및 대상 연령에 맞는 식단 및 영양·위생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효과적인 지도 방안 등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 함.
- 상시적으로 급식소의 실태조사 등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따른, 전담 관리가 요구 됨.
- 역량 있는 전문 식품기관(대학교, 단체 등)인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

### 3)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같은 법 시행령
- 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#### 나. 예산조치

- 2020년 소요예산 : 111,500천원
  - 센터설치 운영 재원 부담율 : 시비 35%, 국비 30%, 구비 35%
  - 2020년 소요 예산 : 2020년 9월부터 운영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설치금액	국 비	시 비	구 비
계	111,500	33,000	38,500	40,000
센터신규설치	110,000	33,000	38,500	38,500
사무관리비	1,500	0	0	1,500

※ 사무관리비

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 
500,000원=(70,000+30,000원)×5명×1회
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협약서 공증비용  
1,000,000원=500,000원×2부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신준호)

#### 가. 제출 배경

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2020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을 위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#### 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보육문제에 있으며,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분석<sup>19)</sup>하면서, 보육시설의 보육 질적 향상과 영유아기의 식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.
- 국정과제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1년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·운영되고 있으며, 현재 전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28개소이고, 그 중 서울시에는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.

19) 식품의약품안전처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,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 보고서(2015.11)

구 분	지자체	설 치 현 황		미설치수	비 고
		설치수	설치율		
전 국	228	219	96%	9	
서 울 시	25	19	76%	6	미 설 치 ( 6 개 소 ) : 마포, 광진, 용산, 관악, 강남, 영등포

<표1.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·운영 현황<sup>20)</sup>>

- 마포구 관내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는 158개소로서 식약처 권고 규모별 설치기준에 따르면 5억 규모이나, 신규센터 설치로 인하여 100개 미만으로 설정하여 3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

등록대상 규모별	설치금액	국 비	시 비	구 비
158개소 100% 등록시	500,000	150,000	175,000	175,000
100개소미만 등록시	300,000	90,000	105,000	105,000

<표3. 이용규모별 예산기준(식약처)>

사업규모		3억	4억	5억	비 고
관리급식소수		60 ~ 99	100 ~ 139	140 ~ 179	※ 158개소(100%) 등록할 경우 사업규모 5억까지 가능
직 원	계	7명	9명	11명	
	센터장	1	1	1	
	팀 장	1	2	2	
	직 원	5	6	8	

<표3. 2019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(식약처)>

구 분	사무실(직원수)			교육실	조리실	소회의실
	7명	9명	11명			
면적(기준)	50㎡	80㎡	120㎡	50명 수용	30명 수용	10명 수용

20) 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(2019. 8월 기준)

<표4. 사무실 권고기준 직원1인당 7.2㎡(행안부)>

다. 종합 의견

- 어린이 건강증진과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성 등의 사회적 요구와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의 추진과 위탁의 필요성 등은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.
- 다만,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가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, 국·시비 매칭 사업의 경우 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며, 관내 시설현황을 검토한 결과 향후 더 많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 운영 시설의 규모와 사업범위에 맞는 인력 구성 등을 신중히 조사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